

#### [서식 예] 공사대금청구의 소(건축도중 부도, 기성고에 대한)

#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공사대금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다음과 같이 하도급 받아 공사를 50% 완성하였습니다. 가. 원고는 20〇〇. 〇. 하순경 피고와 사이에 〇〇시 〇〇구 〇〇길 〇〇의 〇 소재 신축주택 100㎡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은 ㎡당 금



600,000원 합계 금 60,000,000원(100㎡ × 6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 ○.부터 같은 해 ○. ○○.까지로 약정하였습니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을 맡긴 이후인 20〇〇. 〇. 〇〇.경 피고가 발행한 가계수표와 은행에 돌아온 약속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 를 맞게 되었습니다.
- 다. 원고는 당시 위 가항의 공사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부도를 낼 즈음에는 총 공사의 약 50%를 완성하였습니다.
- 2. 원고가 피고의 부도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원고의 위 공사에 대한 기성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 급기야 원고와 연락을 끊고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것을 최고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 3. 원고는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여 공정대로 총공사의 50%를 진행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금 30,000,000원(60,000,000원 × 50% = 30,000,000원)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하여도 피고는 공사대금의지급능력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에 갈음하고, 아울러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 4.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기성공사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하도급 계약서

1. 갑 제2호증 최고서

1. 갑 제3호증 진술서

1. 갑 제4호증 1 내지 3 각 확인서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된 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 데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차지하는 비율임(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94다29317 판결).		

####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 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